남양주시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 557

제 출 일 : 2024. 10. 10.

제 출 자 : 남양주시장

1. 제안이유

- 본 조례는 코로나19로 공교육의 온라인 수업이 일상화되면서 저소득 가구 자녀의 학습권 보장 및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20년 제정함
- 코로나 엔데믹으로 공교육 수업이 정상화되고 다양한 학습 도구와 자원이 보편화됨에 따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추진한 해당 사업을 종료하고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○「남양주시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 조례」폐지

3. 참고사항

○ 부서협의 : 해당없음

○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○ 입법예고 결과

1) 예고기간 : 2024. 8. 1. ~ 2024. 8. 21.(20일)

2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○ 조례·규칙심의

1) 일시 : 2024. 9. 26.(목) 10:00

2) 결과 : 원안가결

남양주시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

남양주시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| 소관 관·과 | | 여성아동과 |
|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입안자 | 관·과장 직위·성명 | 여성아동과장 이 은 경 |
| | 팀장 직위·성명 | 아동친화팀장 장 길 자 |
| | 담 당 자 성명·전화 | 최 은 진 (031-590-8402) |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O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O 「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2항제1호
 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아남양주시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사업'이 종료됨에 따라 사업의 근거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 발생하지 않음

4. 작성자

O 복지국 여성아동과장 이은경

입법예고 결과보고

- 오늘과 내일을 잇는 미래도시 남양주 -



남 양 주 시



수신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「남양주시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 조례」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결과보고

- 1. 여성아동과-22570(2024, 8, 1.)호와 관련입니다.
- 2. 「남양주시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 조례」를 폐지함에 있어 「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 조례」 제2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결과를 보고합니다.

가. 자치법규명 : "남양주시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 조례」 폐지조례안

다. 예고방법 : 시보, 시 홈페이지 공고

라.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마. 향후계획 : 조례규칙심의회 심의

붙임 입법예고문 1부, 끝,

주무관 **최존전** 아동친화담장 **경임자** 과장 **아온경** 역자국장 **설계용**

현조자

시행 여성아동과=24662

접수

우 12284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, 남망주시청 복지국 여성아동과 / http://www.nyj.go.kr

전화번호 031-590-8402 팩스번호 031-590-2269 / dewyjn20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- 정약용의 상상을 깨우는 남양주 -